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잉지급분의 반환명령을 재량으로 규정 등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4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4. 15.
- (3) 회 부 일 : 2026. 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장기관의 장이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
분 등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의무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
하고,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
거나 소량인 경우 등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토록 하는 한편(안 제
22조제2항),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뿐 아니라
상계하지도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생략)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명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신 설>	1.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신 설>	2.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등의 금지) ----- ----- 압류하거나 상계-----.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2조제1항1)에 따르면, 수급자가 제20조2)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3)에 따르면,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

제공하거나 수급권의 변경·중지 등으로 이미 제공된 급여에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회보장급여의 반환명령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1만 9천여 건(515억 8,814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이루어졌고, 이 중 약 11만 2천여 건(408억 819만원)이 반환되었으며, 약 606건(2억 7,652만원)은 반환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2025년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건수 현황 >

(단위: 건)

급여명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반환	면제	발생	반환	면제	발생	반환	면제
생계급여	41,072	39,883	95	42,843	41,495	59	44,173	42,620	16
의료급여	106	28	0	36	18	0	39	10	0
주거급여	44,058	41,767	29	45,212	42,621	15	45,714	43,032	7
긴급복지	324	281	2	336	251	6	274	182	2
장애인연금	1,052	813	11	695	637	6	581	518	9
장애수당	1,090	892	8	1,014	897	4	764	687	6
장애아동수당	301	263	7	385	356	14	339	299	4
기초연금	25,436	24,471	630	16,842	16,373	241	15,475	15,085	136
아동수당	6,068	4,632	78	4,543	3,456	64	3,187	2,360	37
부모급여	479	422	26	866	717	22	902	735	8
양육수당	2,561	1,991	91	2,366	1,751	125	1,767	1,268	4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702	1,458	12	2,361	1,958	3	1,971	1,572	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9	18	0	32	24	1	18	9	0
합계	124,278	116,919	989	117,531	110,554	560	115,204	108,377	271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2023년 ~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금액 현황 >

(단위: 천원)

급여명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반환	면제	발생	반환	면제	발생	반환	면제
생계급여	25,602,600	22,023,813	113,996	27,583,861	23,401,949	67,944	31,022,623	23,081,897	30,164
의료급여	9,936	2,287	0	3,848	2,133	0	1,390	745	0
주거급여	12,158,401	10,256,630	11,689	12,790,292	10,694,265	6,567	12,759,521	9,902,291	4,775
긴급복지	255,617	204,153	2,623	346,015	242,211	12,650	278,998	165,029	1,481
장애인연금	292,792	216,786	2,425	231,806	192,364	1,504	284,882	173,466	4,304
장애수당	113,240	88,427	1,140	119,428	100,840	2,260	114,664	88,024	690
장애아동수당	158,060	124,722	4,130	193,520	150,978	8,440	169,958	100,853	1,740
기초연금	5,120,775	4,502,492	227,517	4,330,575	3,316,432	84,263	3,542,648	2,965,042	56,442
아동수당	2,162,390	1,391,517	22,410	2,636,370	1,577,968	15,530	1,652,445	821,116	9,305
부모급여	357,170	297,682	8,526	1,197,318	838,874	12,669	1,555,604	1,004,769	6,560
양육수당	1,543,380	908,947	40,289	2,031,297	1,051,937	35,952	1,211,370	527,003	12,06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727,595	562,691	5,200	1,156,049	805,181	640	1,024,510	631,676	13,47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7,400	4,850	0	10,570	5,970	190	5,530	1,587	0
합계	48,509,356	40,579,997	499,945	52,630,949	42,381,102	248,609	53,624,143	39,463,498	140,996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천원 미만 버림)

**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은 과잉지급분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을 명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정안은 반환명령 자체를 재량사항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반환액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보호⁴⁾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잉지급분 등 반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지급될 급여와의 상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1조 및 제4조제3항⁵⁾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공정한 제공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요건에 있는 수급자들 사이에 실제 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급여 제공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수준, 과잉지급의 발생 경위, 반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반환액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수급 요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수급자와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반환액 감면 사유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과잉지급의 원인 및 귀책 정도, 반환에 따른 생활 곤란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처럼 이미 소비하였거나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거나 시행령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둘째, 사회보장급여의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강제징수로 인하여 오히려 수급자에게 더 큰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22조제3항⁶⁾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환수금 또는 반환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무상으로는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⁷⁾

그런데, 상계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반환이 필요한 과잉지급분에 대하여 결국 강제징수 절차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수급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이 직접적으로 징수 대상이 되어 단기간 내 생활 수준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수급자 보호와 반환금 징수의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상계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7) 시행 근거는 개별 사회보장급여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을 뿐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분을 반환하는 것이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며, 수급자 동의를 전제로 상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계하지 않는 경우 진행되는 강제징수 절차는 오히려 수급자에게 부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법무부) 소액의 과잉지급분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반환액 감면’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개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조문 정비 필요하고,

급여 상계를 제한하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계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상계 또는 충당 규정이 있는 급여의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예산처) 적정 금액보다 사회보장급여가 많이 지급된 경우 과잉지급액의 규모, 기 사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상계 처리 등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복지정의 실현 차원에서 필요하고, 과잉지급액 미 환수 시 동일한 기준의 복지 수급자 간 수급액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충청남도) 고의적으로 과잉지급분을 소비하는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수 진행시 지원대상자가 상계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보장비용 환수율의 급격한 저하 및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도덕적 해이, 국가재정 누수 등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498